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25호
- 나. 제 안 자 : 김혜련 의원 외 22명
- 다. 제안일자 : 2021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1년 8월 18일

2. 제안이유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1.7.20.)된 바 있음.
-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성 우려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 기술 진흥 조례”가 폐지되었고,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등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다만, 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주요 정책을 조례로 규정하고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실증사업 및 경진대회, 적극행정의 면책 조항과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위원회 기능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혁신기술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2호, 제3호).
- 나.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의 추진 근거와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8조 신설).
- 다. 혁신기술 경진대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신설).
- 라.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 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를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 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 사. 적극행정의 면책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 기술 진흥 조례」(이하 “미래혁신조례”)의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사업과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조례 개정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 신기술과 융합되어 경제·사회적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함.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2021. 7.).
- 다만, 조례 제정으로 유사 조례인 “미래혁신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기 시행 중인 ‘혁신성장 프로젝트(종합계획)’ 등의 주요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발생함.

다. ‘혁신기술’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제2호, 제3호)

-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첨단 기술을 “혁신기술”로 정의하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신기술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한 특허공법과 기술을 혁신기술에 포함하였음.
- 또한, 기술기반 기업 육성을 위해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서비스를 정책적으로 구매하거나 실증기회를 제공해 시장성 점검과 판로개척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으로 정의하였음.
- 이는 폐지된 “미래혁신조례”에 따라 추진 중이던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조치임.

라.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안 제8조)

- 안 제8조는 기술기반 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 시행,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함.
 - 실증사업은 시정혁신과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제품 상용화와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 서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예산은 95억원임 (수탁기관: 서울산업진흥원).

- 실증사업의 선정 대상은 ▶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 직전에 있는 제품·서비스, ▶ 출시 직후 판매실적이 필요한 제품·서비스, ▶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제품·서비스 등임(안 제8조제3호).
- 실증사업 선정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상시 또는 분기별로 평가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실증사업 대상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서 결정함(안 제8조제4항·제6항).
- 아울러 실증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사업수행성과를 공개·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는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8조제7항).
- 이는 “미래혁신조례”에 따라 시행된 실증사업 등을 현행 조례의 지원 사업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조례 본칙에 명시해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입법 조치임.

마. 혁신기술 경진대회(안 제9조)

- 안 제9조는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의 발굴과 기술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혁신기술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음.
- 또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 아이디어의 제안자에게 연구개발비와

판로개척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서울혁신챌린지¹⁾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바. 공동위원장 운영과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5조)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자문’으로 확대하고, 시장 단독 위원장 구성을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며, ‘전담기관’을 ‘관련 산하기관’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또한 안 제15조는 4차 산업혁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위원회는 조례 제정(2021. 7.) 이후 인사혁신처, 한국과학기술단체연합회 등으로부터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아 9월 중 발족될 예정임.
 - 위원장(시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정책방향의 설정, ▶ 정책과제와 추진상황 점검, ▶ 자원조달, ▶ 기관·부서간 조정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됨.

1) 개방형 R&D 방식으로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대학 등의 아이디어 교류 및 경쟁을 통해 기술 융·복합을 촉진하고,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1억 1천만원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 검토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입법조치임.
- 폐지된 “미래혁신조례”에서는 혁신성장위원회를 시장 직속자문기구로 설치하고, 핵심기술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했으며, 시장과 (전)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운영한 바 있음.

사. 사무의 위탁과 적극행정의 면책(안 제17조, 안 제18조)

- 안 제17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관계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8조는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자체감사에서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2)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규정함.

- 현재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등에 관한 사무는 서울시로부터 서울 산업진흥원이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또한, 실증사업이나 경진대회 등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³⁾처럼 공무원들이 규제 혁신과 혁신 성장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3)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를 위해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도입하였고, 규제혁신 5법(「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금융혁신법」 제정,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이 발의(2018. 3.)돼 2019년부터 전면 시행 중임.